

#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 일 시 : '21.5.13.(목) 15:00 ~ 17:05
-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총 9명 (위촉직 8, 당연직 1)
  - 위촉직(8): 한상희, 권영빈, 염형국, 이윤하, 임중환, 최은아, 최현숙, 포포바에카테리나
  - 당연직(1): 인권담당관
- ◆ 자문사항
  -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자문
  -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안) 의결
- ◆ 서면보고
  - 제1차 임시회 조치결과 보고
  -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 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의 계획 공유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과정 안내

## ○ ○ ○ ○ 위원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시인권위원회 정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가 있고 그 다음에 \*\*\*\*\* 경과보고가 있고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기일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있고 이어서 제가 급하게 마련했습니다만 지난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주거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포럼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권고문안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기타 안건을 논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논의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관계공무원

-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

\*\*\*\*\*

\*\*\*\*\*

\*\*\*\*\*

\*\*\*\*\*

○ ○○○ 위원

- 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관계공무원

- 감사합니다.



○ ○○○ 위원

- 다음 두 번째 안건은 아마 오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관계공무원이 오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회의말미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자료에 보면 몇 가지 안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과거의 주제가 있고 11페이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요예산이 6천만 원 밖에 안돼서 그 점까지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고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

- 보고안건 자료갈음

○ ○○○ 위원

- 고맙습니다. 앞의 세 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권담당관실에서 3개, 타부서에서 3개입니다. 타부서 제안 주제 중에서 7번 어린이청소년인권실태 그리고 8번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고요. 7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8번은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8번 주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네요. 3월 25일날 제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 ○○○ 위원

-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체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텐데 왜 실태조사 관련 예산 수익을 못하는 거지요?

○ ○○○ 위원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 하면서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 ○○○ 위원

-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든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해야지 그 자체에서 싸워서 해결하게 해야지요. 시민단체나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조례는 있는데 못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 관계공무원

-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로 많이 지출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 20% 이상을 빼냈습니다.

○ ○○○ 위원

- 저희들 실태조사 예산도 사실 깎인 거지요.

○ 인권정책팀장

- 네.

○ ○○○ 위원

- 그러면 꼭 인권위원회가 제안해서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이 제안하신 양육시설 실태조사나 어르신 돌봄시설 실태조사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코로나상황 때문에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집단적으로 수용되는 환경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특히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만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실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육시설은 그렇고, 어르신 돌봄 시설도 유럽의 예만 보더라도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대부분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요양보호사에 의해서나 노인 상호간에 의한 인권침해도 많이 발생하고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장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위원

- 지금 주제가 9개가 되다보니까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압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타 조례에 의한 것은 일단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위원

- 그러니까요. 조례까지 만든 부서측에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거기에서 넘어온 것을 여기에서 받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성소수자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자면, 인권위 안에서도 계속 안전이 밀릴 정도로 정말 성소수자 사안은 대한민국 전체 특히 서울시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해당부서가 아니라 인권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해서 가장 차별 받고 가장 배제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다른 부서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 한 번도 성소수자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계속 인권 진영과 정치권과의 갈등 속에서 마련되지 못하는 속에 인권진영들이 올해 특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등과 연계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서울시 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구자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가능하고 연구할 틈이 있는지 계속 그쪽에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는 되어져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 연구 주제를 잡는다면 그게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당장 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선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와서 전달을 합니다. 저도 다른

사안들이 다 중요하고 어떤 것이든 반대하거나 할 그럴 사안은 아닌데 계속 소외돼서 온 사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7, 8, 9번은 일단 비중을 낮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번은 관심이 당기기는 한데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보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의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다른 세 번째 주제도 연구위원님이 한꺼번에 말씀 해주셨고 4번, 5번, 6번 인권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부연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6번 주제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것은 바로 정책하고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1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이뤄져야 되고 정책적인 결단이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담당기구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 위원

- 2020년에 조사도 있었구요.

○ ○○○ 위원

- 요즘 청소년들 알바생들의 인권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정리하셨는데 공공주택 관련해서도 사례도 없고 주관과에서 확실한 반영 의지가 있고 도와달라는데 저는 이것을 하면 바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조사결과를 활용하는데 주관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쪽 조례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8번하고 5번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글썄, 그래도 해당부서가 있고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라고 보여져서 해당부서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가 없을 정도도 서울시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라도 하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주노동자 코로나 강제검사 그 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게 바로 안전으로 올라와서 그쪽에다 물어봤었어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담당할 이주 현장 활동가이자 연구자들이 좀 있는가, 그랬는데 급하게 마련하기 어렵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대체로 서울시 아닌 경기도나 농촌지역에 있어서 좀 더 준비해서 내년에 해보자, 요청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독거노인을 내렸고,

○ ○○○ 위원

- 그런데 청소년노동 실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은우 위원

- 물론 저도 교육 관련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8개 주제가 정말 필요한 거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인 취약가구가 각 가정마다 해체돼서 거의 다 1인 가구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권에 대한 실태로 봐서 복지라든가 사각지대로 가는 것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복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조사해도 정책에 반영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셔서 만약에 여기에 쓰인 부분적합이라고 쓴 것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중에서 적함으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시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 위원

- 3번에 어르신 돌봄 시설이면 대체로 요양원일 텐데 요양원들은 지금 아예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데 이게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그분들

이 제일 고위험 군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지가 않습니다.

○ ○○○ 위원

- 저는 5번 청소년노동실태 관련해서 여성청소년 20대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업종 이런 것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개선해야 하는데 20대여성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에 이르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실태조사 이해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 ○○○ 위원

- 청소년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지요.

○ ○○○ 위원

- 대부분이 어중간 한 것이 교육청은 학교안 청소년 노동권 이야기를 하고 학교밖 부분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사실 실태조사라 구분하기도 그렇거든요. 우선 7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 ○○○ 위원

- 해당부서이지요.

○ ○○○ 위원

- 9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7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8번은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인데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둘이 있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빵을 내가 먹을 것이냐 그쪽에 줄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그 문제 이전에 해당부서가 있고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 ○○○ 위원

-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7번, 8번이 조례에 근거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조례에는 해야 한다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조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는 조례, 지침 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하는 형식이 사실 조례라는 형식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조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중앙부서의 지침이라든지 장기 5년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는 실태조사가 모든 것이 다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업들은 조례가 없어서 안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다 해야 합니다.

○ ○○○ 위원

- 어쨌든 정확히 담당할 팀이 있다는 겁니다.

○ ○○○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인권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딱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에서 한 가지만 결정하지 말고 몇 가지 같이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 위원

-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실태조사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

- 인권위원회 주최가 아니고 인권기본조례에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였는데 그때 저희 부서안건으로 올라왔었고,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노숙인 하자고 해서 하셨고,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의견이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태조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5번도 교육청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달리 기구가 있으니깐 일단 제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번도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가 남았습니다. 1, 2, 3, 4, 6 그리고 8번입니다. 1인 취약가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조사 수준에서라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계속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는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 재난상황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조사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의 한 부분이라기보다 코로나와 연관된 코로나의 변수에 의해서 변형된 실태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책으로 바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럴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 위원

-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1번 공약사항입니다. 아마 부서에서 연구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 위원

-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저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서 제대로 대책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이 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실은 완전히 다른데 1인 가구가 청소년부터 청년부터 노인까지 굉장히 넓어서 6천만 원 정도로 그냥 걸핍기식으로 하면 안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면 제대로 예산배정도 하고 연구해서 빨리 현상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 취약가구이기는 합시다만 인권상황뿐만 아니라 1인 가구 그 자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특수영역을 조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뺐으면 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2번과 3번은 문제제기라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의 세대 간 구분입니다.

○ ○○○ 위원

-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 ○○○ 위원

- 한꺼번에 다 하기는 6천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 위원님, 요양병원이나 이런 요양원 같은 데 지금 면회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가능할까요?

○ ○○○ 위원

- 직접 환자들을 접촉하지 않고 체크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위원

- 그러면 손을 들도록 하시지요.

○ ○○○ 위원

- 그러면 1, 2, 3, 4, 8에 대해서 두 번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드신 결과를 말씀드리면 2번과 3번이 손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2번과 3번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중에서 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서 하겠습니다.

○ ○○○ 위원

- 아무래도 실태조사 가능성은 저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가면서 해주십시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다음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와중에 관계공무원이 행정법원을 다녀오셨 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런데 제도개선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 의회에 대해서 권고한 적이 있나요?

○ 관계공무원

- 의회는 권고대상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저는 이 부분에 제일 좋은 방안은 서울시에서 발의 했다가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서울시의회가 혐오차별 금지조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조례 입법권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입법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 권고가 아니라면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우리는 못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규정 해석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처리가 된다는 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안되니까 이렇게 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서울시의회 혐오차별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만들라는 권고가 아니니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관계공무원

- 저희가 중앙부처에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나 일단 인권위 전체가 민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그런 제안에 굳이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어쨌든 시장이 아니면 의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도 입법발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권고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권고안은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좋습니다.

○ 관계공무원

- 저희는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이고 현장부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시민인권 보호관이 배석되어 있고 사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 요청사항으로 보고된 건으로 정리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호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위원

- 그러면 저희 위원회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위원님 중에서 한분 정도 자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위원님은 어떻겠습니까?

○ ○○○ 위원

- 네.

○ ○○○ 위원

-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인권기본조례에 대해서 소송에서 근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권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 걸음 내지 반걸음이라도 앞서나가는 모양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준비된 안건 중에 마지막 안건입니다. 지난 번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인권실태 조사가 있었고 그 조사결과에 기반 해서 4월에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에 바탕에 뒤서 실태조사 보고서 포럼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서울시장에게 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주문에서 노숙인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건강권, 먹을 권리, 노동할 권리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그 다음에 2항에서 장·단기적인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기 바란다고 했고, 권고배경에서는 그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상황이 됐었고 인권침해가 많다 그래서 우리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지난 4월에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주거취약계층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그런 사항을 지적했

있고요. 3페이지에 권고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유엔에서도 홈리스의 인권문제 초미의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인가 권고안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어쨌든 노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항목들은 우리 법에서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총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권고사항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과제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 이렇게 나뉘었는데 긴급과제로는 급식서비스를 확충해야 되고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이고, 6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지침에 충실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주거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단기과제로써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개선해서 긴 기간 동안 사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독립된 주거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또, 임대주택이나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를 확충해서 사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도 일정한 수입이 전제가 될 때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의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 해달라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노숙인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시차원의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강제퇴거라든지 또는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사실 유엔인권 주거권보호관 보고서에서 물품들을 압수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에서는 총론수준에서 거론했습니다. 최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 사회보장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거지원, 먹거리 복지 또는 의료 진료서비스 등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해라 그리고 의료서비스 또한 지정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정도로 권고문을 작

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권고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이 권고가 나오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회람을 하고 주무부서가 답변을 하거나 또는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겠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잊었다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논의했으니까 알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것 몇 가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관해서 주거임대주택 이런 것을 제공할 때 진료를 받아라, 검사를 받아라, 뭐 이런 조건들은 담당부서의 소관업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2.4의 경우에도 사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명확히 특징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편으로는 서울시 행정에서 강제되거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주무부서하고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구수정이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사안이 있으면 그런 정도로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에게 위임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권고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

- 제가 약간 추가되거나 오타나 이런 것하고 약간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 급식서비스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숙인복지법이 있고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수정내용을 올렸고 하여튼 몇 가지 제가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 관련해서도 공공일자리 접근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가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성별, 연령, 거쳐형태 등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화시켰고 또, 주거관련해서도 홈리스들에

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싼 이것이 기본이고, 그중에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좀 낮춰주는 이런 것으로 가게 하는 등 수정의견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어쨌든 권고는 구체적으로 행정업무를 변경하거나 또는 앞으로 수행하는 방향성을 제기하는 거니까 부처들과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이게 내용은 다 훌륭한데 권고사항이 많으면 실효성은 어떨까요?

○ ○○○ 위원

- 그런데 실태조사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도 줄이는데 힘들었습니다.

○ ○○○ 위원

- 여기에 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월세를 낮추라든지 보증금을 낮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진정이 됐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차별이라고 왔었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거기가 보증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월세가 3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낮춰라 이것은 SH에서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기각이 된 거라 그게 LH하고도 비교했는데 시 예산으로는 너무 부담된다는 것이고 현재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입임대하고 일반 200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한다 이것도 역시 SH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얼마로 더 낮추라고 단정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2-4에 일상적인 인권침해 감시 이 내용도 제 생각에는 그때 서울역에 응급잠자리 거기를 강제 퇴거시켰던 내용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강제 퇴거된 분들 때문에 코로나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을 다 호텔이라든지 원룸

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주관과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한 상황이라 그때 논의하면서 주관과에서 더 이상 조치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 ○○○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에 현장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시주거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시원으로도 갔지만 쪽방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쪽방으로 가면서 사실은 많은 노숙인들에게는 차라리 길거리가 낫다고 할 정도로 쥐나 바퀴벌레 이래서 거기를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짐이나 잠자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도 길거리 삶을 보장하게 하느냐 이것의 문제에서 당사자로서는 강제되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짐을 가져가거나 청소를 핑계로 짐을 다 옮겨놓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6쪽 2-1임시주거지원사업 관련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좀 늘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체로 쪽방으로 보내는데 임시주거지원은 2개월 거기에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서 3개월 이런 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저래 빈곤진영의 싸움으로 수급비가 늘고 그중에 주거급여가 늘잖아요. 25만원에서 올해 31만원까지 늘었는데 이렇게 늘고 나면 그만큼 주거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쪽방촌이 방값을 고스란히 올립니다. 그래서 주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쪽방주인들이 그 사람들은 다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는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거개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임시주거 지원사업 개선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현장상황을 포함해서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사실 가능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중심으로 적으려고 했거든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요.

○ ○○○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랑 잠자리 문제, 노숙은 주거의 문제인데 그것과 관

련해서 먹는 문제는 실제로 법이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거문제는 그렇습니다.

○ ○○○ 위원

- 네. 그러면 이 안건은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 ○○○ 위원

-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에 1-2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가 있는데 여기 기술된 방식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주치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주치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지 복지가 필요한지 또는 이웃이 필요한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일차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 부분에 보면 지정병원 확대, 병원으로 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응급실로 가거나 중증화 돼서 입원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일종의 주치의가 없고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야 된다, 노숙인에게 주치의를 둘 수 있어야 되겠고 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하는 것이 두 번째로 와서 주치의가 필요하다면 지정시설로 넘길 수 있도록 가야만 서비스 자체가 종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면 의료의 부분만 딱 치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합니다. 잠깐 입원하고 다시 갔다가 퇴원하고 반복하는데 이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주치의가 필요하고 또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권고사항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인권위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 ○○○ 위원

- 그 부분은 긴급과제로는 어려울 것 같고 장기과제에서 한번,

○ ○○○ 위원

- 노숙인 의료가 국민의료랑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별도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노숙인으로서 의료보호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뽁뽁하게 만들었습니다.

○ ○○○ 위원

- 뒤쪽에 1차적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순서에서 적절한 1차적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라고 어차피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명칭을 좀 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겁니다. 돌봄과 건강, 주거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주시고 앞쪽의 명칭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긴급조치에 들어가야 하는지 시기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긴급하게는 서울시 행정능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단기나 장기 정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여튼 수정하겠습니다.

○ ○○○ 위원

- 다음 주 중으로 나오겠네요.

○ ○○○ 위원

- 그렇지요. 다음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합대회 MT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로 못하고 있지요.

○ ○○○ 위원

- 이것은 의료시스템에서 조금 더 들어간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성인4명 중에 한명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우울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 자체가 SSR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면 누구나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독 정신과 의사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한테 가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가면 사람들이 낙인이 찍힌다고 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율이 우울증이 높고 우리가 자살이 세계1위입니다. 그런데 치료율이 12.2%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전한 우울증에 대한 처방 약제를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환경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약물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게 개원 의사나 주치의가 되면 다 처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전문 인력에 의해서 안전한 약물이 독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다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왜곡된 부분인데 그것은 인권위쪽에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 ○○○ 위원

- 그것은 의료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처방을 낼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겠지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아마 의료보험의 약제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은데 안전한 약물을 먹게 되면 사실 자살까지 안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겠다고 봅니다.

○ ○○○ 위원

- 서울대학교 구내약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증 약하고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의사처방을 받고요?



○ ○○○ 위원

- 네, 그렇지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런 정신질환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지금 사람들이 워낙 스트레스 쌓이게 하니까 우울증에 대한 빈도가 높고,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해관계로 되어 있고 직장에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치의가 있으면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흘리지는 않으니까요. 최소한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들어만 주면 상당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의료복지 돌봄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고, 약물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접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세계1위입니다.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 위원

-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인권위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 ○○○ 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6월이나 7월초에 했으면 하는데.

○ ○○○ 위원

- 7월 8일로 하시지요.

○ ○○○ 위원

-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8일 3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2차 인권위원회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종료】